

#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지침

제 정 : 2021년 03월 19일

전면개정 : 2026년 07월 01일

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라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 I.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

### 1. 이용목적

- 1) 신용 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
- 2)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
- 3)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### 2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1) 식별정보 : 개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 등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대표자 성명 등
- 2) 신용거래정보
  - 가) 개인신용거래정보 : 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, 가계당좌·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 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 등
  - 나) 기업신용거래정보 : 가계당좌·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 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, 대출·지급보증, 신용공여 현황 등
  - 다) 금융질서 문란정보 :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라) 신용능력정보 : 개인의 직업,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 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

마) 공공기록정보 :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## II. 제공대상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### 1. 신용정보 제공대상

- 1)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- 2)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

2.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: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(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, 신용평가관련 모형개발 및 분석자료 활용 등) 및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함

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: 식별정보, 개인신용거래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신용능력 정보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

## III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1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(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시점. 단, 상거래 관계 효력의 종료시점 이 후에는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 이행의 목적으로 5년간 보유할 수 있음)

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: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
## IV.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(해당사항 없음)

## V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

### 1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

- 1) 신용정보 제공·열람 청구권 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 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
- 2) 신용정보 정정 청구권 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신용정보 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.
- 3)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
- 4)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등의 철회권 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방문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

### 2. 권리행사 방법

- 1) 상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: 신용정보주체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음
- 2) 상기 권리의 행사 신청 시 당사는 관련 내용에 관한 서면,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기타 관련 증빙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

## VI.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

### 1. 이름

-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: 준법감시인 이해숙

### 2. 연락처

- 전화번호: 02-6929-0117
- 이메일 주소: [hsatom@venetusasset.com](mailto:hsatom@venetusasset.com)